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 10. 16 ————— 사하구청장
- 나. 회 부 일 자 : 1997. 10. 17
- 다. 상 정 일 자 : 제6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97. 10. 30)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장영석 보건소 서무과장)

가. 제안이유

보건소 설치운영의 근거 법률이 보건소법에서 지역보건법으로 95. 12. 29 법률 제5101호로 개정됨에 따른 근거 법률조항을 변경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목 적

- 현 행 : 보건소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조례 제1조)
- 개 정 : 보건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안 제1호)

○ 동 사무장 유고시 공인관수자 지정 및 관수자와 사용자간 인제인수 대상공인을 민원전용 동장직인에서 민원실 전용 중계민원 구청장 직원을 추가함.

○ 업 무

- 현 행 : 보건소법 제4조에 규정된 업무(조례 제3조)
- 개 정 :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업무(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본 개정조례안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5. 12. 29 법률 제5101호로 전문개정하여 96.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하구 보건소 설치조례 내용중 보건소의 설치운영 및 업무관련 근거 법률조항을 보건소법 조항에서 지역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 시키는 사항으로서 개정이 다소 늦은감이 있으나 원안과 같이 개정하여 미비한 사항을 개선토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